

	<b>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프로그램 운영규정</b>	규정번호	3-3-42
		제정일자	2021. 3. 1.
		개정일자	2026. 3.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2(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 라 한다) 보건의료행정과의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HIM)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조사, 분석하고 요구되는 역량을 반영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목적으로 (재)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 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이하 “인증” 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 2 장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제3조(주관학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은 보건의료행정과(이하 “학과” 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3조의2(교육목표) ①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국내·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시대 사회적 요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IFHIMA, AHIMA 등), 구성원(졸업생 및 산업체, HIM 포함)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개정 2026.3.1.)

② 프로그램의 취지 및 운영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교육목표와 목표에 대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장·단기 발전계획에 대한 실행 정도를 년 1회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2.1.5.]

제3조의3(위원회 설치) 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과운영위원회, 역량교육과정위원회, 인증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운영위원회, 역량교육과정위원회, 인증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학과 운영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5.]

제4조(프로그램 책임자) ① 프로그램 책임자(이하 “책임자” 라 한다)는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연구)중점교원, 강의(교육)전담교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6.3.1.)

②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관리에 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 검토, 기획, 개발, 예산 수립 및 집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3. 프로그램 인증의 총괄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
4. 인증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
5. 인증과 관련한 학과 회의 및 인증평가관리위원회 소집 운영에 대한 사항
6. 기타 인증과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증평가관리위원회) ①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증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내부위원은 학과소속 모든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⑤ 외부위원은 직무관련 산업체 현장 경력 10년 이상 현장전문가로 직무별 1명 이상 4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인증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3.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4. 프로그램 행·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 이수, 전입 및 이수포기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의 주기적 질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자체평가
  8. 프로그램 CQI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그 밖에 프로그램 및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 3 장 프로그램의 이수

제6조(신청자격) ①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 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
2. 학과로 전입하는 학생
3. 타 대학에서 본교 학과로 편입하는 학생

② 보건의료행정과로 전입하는 학생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개시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 복학 해당 연도의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1.5.]

제7조(신청절차) ① 제6조 제1항 제1호의 학과 신입생은 입학 시 프로그램 이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며, 본 프로그램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

② 제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이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직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절차) ① 책임자는 제7조에 따른 이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에 이수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에 대체 교과목 [별표 1]에 대한 심의 및 동등성 인정 절차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를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학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프로그램 이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프로그램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9조(프로그램 이수 포기) ①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예정학년 최종학기 개시 전에 이수포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이수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평생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위원회에 이수포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수 포기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퇴생의 경우 자퇴 시 자동으로 프로그램 이수 포기를 승인한다.[개정 2022.1.5.]

제10조(학생지도) 책임자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이수 보장을 위한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고, 평생지도교수를 통해 교과목 이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프로그램 최종성과) ① 프로그램은 학과에서 설정한 인재상과 정평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최종성과[별표 2]를 설정한다.

② 프로그램 최종성과는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 및 학과 게시판 등에 상시 공지한다.

③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은 프로그램 최종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제12조(프로그램 편성 및 이수학점) ① 프로그램은 정평원의 교과목 이수체계에 근거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이수 및 졸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학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필수이수 교과목은 [별표 4]을 준수하여 43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 특성화 영역 선택이수 교과목은 [별표 5]를 준수하여 10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3. 필수이수 교과목 중 [별표 4]의 실습 교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다만, COVID-19 등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은 예외로 한다.

②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제1항에 정한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전체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필수 및 선택 이수 교과목의 미 이수 학생은 지도교수의 상담을 통하여 재수강의 기회를 가진다.

[제목개정 2026.3.1.]

[전문개정 2026.3.1.]

제13조(프로그램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 및 인정) ① 프로그램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을 위한 이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표 3]의 교과목별 선·후 이수체계를 따라야 한다.

② 프로그램 교과목의 이수체계는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과 게시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이수 가이드 등에 공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강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정한 프로그램 교과목 중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후수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선수과목이 여러 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학기 이상은 선수과목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④ 휴학 및 복학, 제적 및 재입학, 편입학, 기타 프로그램 책임자가 인정하는 사유로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가 불가능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후수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상담을 통해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재입학 또는 복학생으로서 기존의 교육과정상 부득이하게 선·후수 체계 준수가 어려운 경우
2. 편입생으로서 편입 전 대학에서 선수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3. 기타 프로그램 책임자가 이수체계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6.3.1.]

[전문개정 2026.3.1.]

제13조의2(프로그램의 학습성과) ① 역량교육과정위원회는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지속적인 질 개선(CQI)을 위해 매 학기(매년 6월~7월, 12월~2월) 정기적으로 교과목 운영 담당 교수의 평가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성과 성취도를 평가한다.

② 역량교육과정위원회는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위해 운영된 교과목의 교육내용 범위, 수준, 방법, 평가 방식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한다.

③ 역량교육과정위원회는 학기별로 운영된 필수이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평가, 현장 실습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증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역량교육과정위원회의 학습성과 성취도 종합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최종성과 평가 체계 개선안 마련 및 교육목표,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⑤ 교과목 성취도 평가결과 성취수준 미달자(F, 60점 미만)의 경우 개별상담, 향상수업 등의 추가 학습 기회를 통해 학습내용을 보강하여 학업 성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6.3.1.]

제14조(프로그램 최종성과 성취도 인증심사) 인증심사는 교과기반 학습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최종성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5조(졸업요건) ① 학칙 제44조(졸업요건)를 충족하고, 제12조에서 정한 선후수체계에 따른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제14조의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학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학위 명칭에 ‘보건전문학사(보건의료정보관리)’로 표기한 학위[별지 제3호 서식]를 수여한다. 단, 프로그램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보건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 제 4 장 보 칙

제16조(지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통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 1] 보건의료정보관리 동등성 인정 교과목

현행(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교과목)	법 개정 전(의무기록관련 이수교과목)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의무기록관리학
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
3. 보건의료조직관리	보건의료조직관리
4. 건강정보보호	-
5. 질병및의료행위분류	질병 및 수술분류
6.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	의무기록실무기초, 의무기록실무응용
7. 의무기록정보 질향상실무	-
8. 압등록	압등록
9. 의료의 질관리	적정진료보장
10. 건강보험이론및실무	건강보험이론 및 실무
11. 보건의료통계	보건의료통계
12.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의료정보관리학
13. 의료정보기술	보건의료DB
14. 의료관계법규	의료관계법규
15. 의학용어	기초의학용어, 의학용어실습
16. 병리학	병리학 개론
17. 해부생리학	해부생리학
18. 현장실습	현장실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전산학’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한 보건의료DB,보건의료 DB실습, 데이터베이스, 의료데이터베이스론은 현행 교과목 ‘의료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관리’의 동등성 인정 교과목으로 인정함

※ 기타 동일 교과목의 구체적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 현황에 따름

[별표 2] 프로그램 최종성과

최종 성과	최종성과 요약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최종성과
PO1	보건의료정보 기본 지식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기초의학지식, 정보기술 등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한다.
PO2	보건의료정보분류	의무기록정보 내용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정보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코드를 적용한다.
PO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 목적에 맞춰 변환, 분석할 수 있고, 통계를 생성하는 등 정보를 활용한다.
PO4	보건의료정보 변화 대응	보건의료정보관리 영향 요소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PO5	보건의료정보 표준 기반 정보관리	의료정보시스템을 이해하고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보건의료표준과 정보기술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유지 관리한다
PO6	대인관계 의사소통	보건의료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PO7	조직관리 역할 및 리더십	보건의료조직을 이해하고 조직 내에서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과 리더십을 수행한다.
PO8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직업윤리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법적인 임무와 윤리, 사회적 책임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PO9	보건의료 정책 및 환경변화 관리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및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PO10	진로탐색 및 자기계발	보건의료 및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진로탐색 및 자기계발을 통한 역량을 향상시킨다.

[별표 3] 프로그램 교과목 선·후수체계

선수교과목명			필수	후수교과목명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년	학기	교과목명
1	1	의학용어	▶	3	1	질병및의료행위분류
			▶	2	1	건강보험이론및실무
			▶	2	2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	3	1	암등록
			▶	3	2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1	1	해부생리학	▶	3	1	질병및의료행위분류
			▶	2	1	건강보험이론및실무
			▶	2	2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	3	1	암등록
			▶	3	2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1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1	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1	2	병리학	▶	3	1	질병및의료행위분류
			▶	2	1	건강보험이론및실무
			▶	2	2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	3	1	암등록
			▶	3	2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3	1	질병및의료행위분류	▶	3	2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별표 4]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필수이수 교과목 목록

교과목	실습과목 여부	학점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3
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실습	2
3. 보건의료조직관리		2
4. 건강정보보호		3
5. 질병및의료행위분류	실습	3
6.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실습	3
7.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실습	3
8. 압등록	실습	3
9. 의료의질관리		3
10. 건강보험이론및실무	실습	3
11. 보건의료통계	실습	2
12.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실습	2
13. 의료정보기술	실습	2
14. 의료관계법규		3
15.	의학용어	3
	의학용어실습	2
16. 병리학		3
17. 해부생리학		3
18. 현장실습	실습	3
총 계		5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1 보건의료정보 관련 이수 교과목

[별표 5]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선택이수 교과목 목록

특성화 학습 영역	교과목	학점
보건의료관리	1. 공중보건학	3
	2. 병원회계재무관리	2
	3. 원무관리	2
	4. 사회보장및의료보장	2
보건의료정보관리	5. 의무기록전사	3
보건의료정보기술	6. 병원전산	2
총계		14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 학 위 증 서

성 명 :

○○○○년○○월○○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 전문학사명 : ○○학과, ○○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

년 월 일

## 경 민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경민대학교20○○-○○○○